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9. 30 선고 2021재나18 판결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7576 판결

재심대상판결 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 10. 10. 선고 2007나4450 판결 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 7. 3. 선고 2008재나40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 같은 도면 표시 3, 4, 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83㎡, 같은 도면 표시 2, 3, 12, 5, 6,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7.37㎡를 각 인도하고, 75,000,000원과 2001. 5. 1.부터 위 (가), (나), (다)부분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남편인 C과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의 인도 및 피고가 이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전주)2007나4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8. 10. 10.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8. 12. 30.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 법원 (전주)2008재나40 판결의 확정

원고는 위 대법원 2008다77306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인 2008.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전주)2008재나40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7. 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11. 2. 제2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가.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1) C이 소송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C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95. 5. 30.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피고나 C이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증명하였음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원고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위조한 서류다. 피고는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07. 9.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피고의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계약서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1995. 8. 31. 구속되어 1996. 7. 3. 출소한 사실, 원고의 처 O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판단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2695 판결과 그 사건의 변론조서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채 위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같은 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4) 제1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7. 4. 18. C과의 사이에 위 전주지방법원 97가합3209호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권리1)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는 C이 위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2025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07. 4. 18. 작성된 공증인가 M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184호 지불각서 및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172호 합의서의 효력이 각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위 조정조서에 어긋난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제2재심대상판결은 위 가.의 2), 3), 4)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와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제1재심대상판결을 한 법관이 다시 제2재심대상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제2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제5호가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같은 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8. 12. 30.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심사건에서 청구기각 내지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거의 매년 제1재심대상판결 및 제2재심대상판결이나 그 밖의 재심사건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심청구를 하여 왔고, 제1재심대상판결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총 12건인 사실, 원고가 이 부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C의 소송대리권 흠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C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관한 판단 누락,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조서에 어긋나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인정 등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의 재심청구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순번	재심청구일	사건번호	재심 대상 판결	결과 등
1	2008. 12. 30.	2008재나40	제1재심대상판결	2009. 7. 3. 재심청구 기각 (2009. 11. 2.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확정)
2	2009. 11. 2.	2009재나61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2010. 5. 7. 제1재심대상판 결에 대한 일부(나머지 청 구 기각) 및 제2재심대상판 결에 대한 부분 소 각하 (2010. 8. 23. 대법원 2010다40956호로 확정)
3	2010. 8. 23.	2010재나50	제1재심대상판결.	2010. 10. 29. 제1재심대상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판결	판결에 대한 일부(나머지 청구 기각) 및 제2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부분 소 각하 (2011. 1. 18. 대법원 2010다91763호로 확정)
4	2011. 1. 17.	2011재나19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3 판결	2011. 7. 7. 소 각하 (2011. 10. 18. 대법원 2011다61745호로 확정)
5	2011. 10. 18.	2011재나64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내지 4 판결	2012. 6. 11. 소 각하 (2012. 9. 21. 대법원 2012다54812호로 확정)
6	2012. 9. 21.	2012재나78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내지 5 판결	2013. 3. 28. 소 각하 (2013. 7. 1. 대법원 2013다29677호로 확정)
7	2014. 1. 2.	2014재나10	제1재심대상판결	2014. 7. 17. 소 각하 (2014. 11. 18. 대법원 2014다53165호로 확정)
8	2014. 11. 19.	2014재나72	제1재심대상판결, 순번 7 판결	2016. 1. 21. 소 각하 (2016. 7. 18. 대법원 2016다18272호로 확정)
9	2016. 7. 18.	2016재나14	제1재심대상판결	2017. 6. 29. 소 각하 (2017. 12. 22. 대법원 2017다25109호로 확정)
10	2019. 3. 18.	2019재나15	제1재심대상판결	2019. 6. 13. 소 각하 (2019. 11. 7. 대법원 2019다17201호로 확정)
11	2019. 11. 18.	2019재나22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2020. 9. 17. 소 각하 (2021. 1. 19. 대법원 2020다42357호로 확정)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이유를 재심사유로 들어 제1, 2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해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판단을 받아(특히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3 판결에서 재심청구 기각된 부분) 재심대상판결의 적법성을 확인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봉원, 판사 홍승모, 판사 정순열

별지

1)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C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